

# H&T애널리틱스센터 규정

시행: 2022. 12. 01.

## 전문

H&T애널리틱스센터는 비즈니스애널리틱스(Business Analytics)를 호스피탈리티 및 관광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과제 발제, 산학연계 과제 수행, 교육사업 등으로 연구 및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. 4차 산업 시대 애널리틱스(Analytics)가 전 분야에 화두가 되면서 이종 산업 간 융·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, 우리 대학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관광대학을 지니고 있으므로 선도적인 안목으로 학문적·사회적 이바지하는 것을 본 센터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연구처 부설 H&T애널리틱스센터(Center for H&T Analytics, 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소재지)** 본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. 단, 센터 연구진의 상주 및 회의 공간을 위한 장소가 협소할 시 본교 인근에 센터 연구 활동 공간을 별도로 운영한다.

**제3조(설립 목적)** 본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호텔관광대학 보유 역량을 바탕으로 Business Analytics를 Hospitality 및 Tourism 산업에 도입하고, 다양한 융복합 연구과제 발제, 데이터 플랫폼 개발, 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Business Analytics를 해당 분야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 측면에서는 H&T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고,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연구 및 교육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본 센터는 제3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H&T산업 접점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, 분석 및 공적 정보 배포
2.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 분야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
3. H&T 산업 문제해결과 애널리틱스 융·복합을 위한 다양한 정부 및 산학연계 과제 수행
4. H&T 산업의 애널리틱스 인재 양성을 위한 활발한 교육사업
5. 공동연구, 학술회의, 세미나 등을 통한 국제협력사업 주도
6.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# 제2장 조직

**제5조(기구)** 본 센터는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연구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자문위원회
4. 애널리틱스연구팀
5. H&T 산업연구팀
6. 연구지원팀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각 참여연구자가 추천하고 센터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
③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조직
2.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연구 방향 조정
4. 연구원, 연구조원, 행정 및 기술 요원의 임명과 해임
5. 예산 및 결산
6. 센터의 제 규정의 개폐

7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 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자문위원회)** ① 본 센터의 주요 정책 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성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평가·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 센터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과제 수행 간 해 분야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

2. 신규 사업·연구 과제 발제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

**제8조(애널리틱스연구팀)**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애널리틱스연구팀은 연구팀장, 연구원,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.

**제9조(H&T산업연구팀)**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H&T산업연구팀은 연구팀장, 연구원,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.

**제10조(연구지원팀)**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실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지원팀을 둔다.

② 연구지원팀은 연구지원팀장은 연구실장이 겸직하고, 실무 담당은 행정요원 1인으로 구성하며, 충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원할 수 있다.

③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자재 구입 및 관리

2. 연구지원 행정업무

3. 세미나, 워크숍,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등의 행정지원

4. 협동 연구의 대외협력 관련 행정지원

5. 연구비 관리

6. 센터 홈페이지, 대외홍보 및 소셜미디어 관리

7. 기타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총무 업무

**제11조(구성원)** 본 센터는 센터장, 연구실장, 연구팀장,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.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연구원의 구분은 본교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다.

**제12조(연구센터장)** ① 센터를 대표하여 연구센터의 업무를 주관한다.

② 센터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센터장 및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연구처장이 임명한다. 단, 센터 설립시에는 연구처장이 센터장을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3조(연구팀장)** 각 팀의 팀장은 센터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14조(연구실장)** 본 센터 연구팀의 연구 활동 총괄 및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15조(상임연구원)**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16조(전문연구원)** 전임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센터 내 상시 근무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 단,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지닌 연구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.

**제17조(객원 연구원)** 객원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 또는 기타 센터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18조(일반연구원)** 일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19조(행정요원)**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재정 및 기타

**제20조(재정)**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
2. 정부, 기업 등 대외 연구과제 수주 수탁액
3. 연구 촉진 명목 기업 기부금
4. 교육사업 수익
5. 저서 출판수익
6. 기타

**제21조(회계 등)** 센터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하며,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**제22조(보칙)**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②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